

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72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4. 7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제4차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다자녀 기준 완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권장에 따라 다자녀 가정 및 북한이탈주민의 관내 야영·휴양시설 사용료 경감 지원을 확대 제공하고, 사용료 면제 기준을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확대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가. 사용료 100분의 50 경감대상 추가(안 제7조)
 - 「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- 나. 사용료 100분의 30 경감대상 추가(안 제7조)
 -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- 다. 사용료 100분의 20 경감대상 추가(안 제7조)
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- 라. 사용료 면제 기준 일부 변경(안 제7조)
 -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, 제156조

5. 참고사항

- 가. 예산조치사항: 해당사항 없음
- 나. 규제사무심의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성별영향평가
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3조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감면대상에 추가 (가족복지과-3502호, 2023. 1. 27.)
- 라. 입법예고: 2023. 2. 6. ~ 2. 27.(21일간) / 의견 없음
- 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나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7조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차. 「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
제7조제3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아.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
제7조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에 휴양림 및 캠핑장을 이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용료 감면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해야 한다. 이 경우 감면 대상이 중복될 경우 높은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.	제7조(사용료 감면) ----- ----- ----- . ---- ----- .
1. 면제 가. (생 략)	1. --- 가. (현행과 같음)

나. 구청장이 휴양림 또는 캠핑장 내에 공익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100분의 50 경감

가. ~ 자. (생략)

<신설>

3. 100분의 30 경감

가. ~ 사. (생략)

<신설>

4. 100분의 20 경감

가. ~ 나. (생략)

<신설>

나.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2. -----

가. ~ 자. (현행과 같음)

차. 「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
3. -----

가. ~ 사. (현행과 같음)

아. 「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

4. -----

가. ~ 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

근거법규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4호
 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입화산 자연휴양림 및 캠핑장 관리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개정
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,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3. 작성자

- 소 속: 공원녹지과
- 직 급: 지방녹지주사(일반임기제)
- 성 명: 송재탁
- 연락처: (052)290-4412